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30호서식]

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

작성 시 유의사항

1. **피해아동을 행위자와 분리한 상태**에서 작성
2. **육안** 또는 **피해아동 진술** 등으로 확인된 부분만 기록(필요 시 문서 · 사진 · 동영상 등 확보)
3. **[신체적 학대]**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,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, 완력을 사용해 신체 위협,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

 [성 적 학 대] 성적 노출, 성적 만족 위한 아동 관찰, 성교행위, 성매매 혹은 매개행위 등
4. **[정서적 학대]**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(언어적 폭력, 공포 분위기 조성, 집 밖에 세워 두는 행위, 집 밖으로 내쫓음,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, 가정폭력에 노출 등)

 [방임] 물리적 방임(의식주 미제공, 불결한 환경, 위험한 상태에 방치, 출생신고 하지 않음), 의료 · 교육적 방임 등 **[유기]** 버리거나, 보호 없이 떠나는 행위 등

Ⅰ. 신고정보

신고일시	년 월 일 시간(:)
신고번호	(현재 포함 신고이력 회)
신고자	피해아동□ 가족□ 신고의무자□(직업군:) 익명□ 기타□()

Ⅱ. 신상정보

※ 피해아동별, 학대행위자별로 각각 1매씩 작성

피해아동	이름:	성별:	연락처: ()
	국적: 한국□ 외국□ (국가:)		주민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 -
	주소: 주거: 주소와 같음□ 다름□()		
학대행위자	이름:	성별:	연락처:
	국적: 한국□ 외국□ (국가:)		주민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 -
	아동과의 관계: 부□ 모□ (외)조부모□ 기타□()		
	주소: 아동과 같음□ 다름□()		
	주거: 주소와 같음□ 다름□()		

Ⅲ. 발생정보

발생일시	년 월 일 시간(:)		
발생장소	가정〔내〕	아동학대 외 가정폭력 여부 유□ 무□ 확인불가□	
	가정〔외〕	기관/시설□()	공공장소□(
		기타□()	CCTV 유□ 무□

Ⅳ. 현장확인

※ 만6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,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

1. 신체적 학대	※ 도구 이용 □(도구종류·행위:)		
㉠ 눈	□ ()	㉡ 머리	□ ()
㉢ 입·입안	□ ()	㉣ 귀	□ ()
㉤ 팔·다리(안쪽)	□ ()	㉥ 목	□ ()
㉦ 몸통(안쪽)	□ ()	㉧ 화상	□ ()
※ (기타)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해 아동과 행위자 진술이 다르거나 기타 피해의 부연설명 등을 상세히 기재			

2. 성적 학대	신체 접촉 □	성적 노출 □ 강요 □	성매매 (매개·강요) □	
	기타 □ ()			
3. 정서적 학대	폭언 / 위협 / 강요 □	감금 / 억제 □	가정폭력에 노출 □	집 밖으로 내쫓음 □
	기타 □ ()			
4. 방임(유기)	보호자 부재(아동만 방치) □		장시간 굶주림 (영양상태 불량) □	
	아동 개인 위생불량 □ (예. 계절에 맞지 않는 옷 / 장기간 씻지 않음)		거주 환경 위생불량 □	
	기타 □ ()			

Ⅴ. 확인경로

조사자 직접확인 □	진술 (피해아동 □ 행위자 □ 신고자 □ 기타 관련자 □)	CCTV □
기타 □ ()		

Ⅵ. 판단/조치/결과

판단	오인 또는 허위신고 □ or (Ⅳ.항목) ☑ 체크 0개 □	신고이력 2회 이상 □ or 「성학대」 또는 「중상해」 □ or (Ⅳ.항목) ☑ 1개 이상 □	
조치	APO 인계 (전수합동조사)	피해아동 분리 등 조치 및 입건여부 반드시 검토	
결과	현장종결 □ ※ 〈기타〉에 판단사유 등 기재	응급조치 1호(제지) □ 3호(보호시설 인도) □ 2호(격리) □ 4호(의료기관 인도) □ 5호(연고자 등 인도) □	긴급임시조치 □ 사건처리 □ 현장종결 □

〈기타〉 * 조치·결과 판단사유 (현장종결 시 필히 기재) / 피해자보호 · 여청수사팀 등 인계 시 참고사항 등

동행출동	지자체(전담공무원)□ 아동보호전문기관□ 기타□()		
조사자	(소속)	(계급)	(성명)